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09 호 2023. 7. 6.(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303회[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304회[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305회[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306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307회[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308회[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309회[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310회[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311회[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312회[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313회[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314회[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315회[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621회[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57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622회[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9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623회[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7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624회[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5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300회[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폐지훈령] 102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3회[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10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31회[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11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32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1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35회[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11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36회[하천점용 허가 고시]..... 121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40회[울산 북구 천곡동 00빌딩 신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12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43회[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5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49회[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16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50회[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16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56회[울산 북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63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input type="checkbox"/>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당연직”을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으로 하고, “부서장”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하고,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부서장이 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명시하여 타 구·군 간 위원구성 동일성 및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심의·자문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 준용 조례명 현행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 변경(제8조)
 - 당연직 : (당초) 부서장 → (변경) 국장
 - 간 사 : (당초)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 (변경) 부서장
- 준용 조례명 현행화(제18조)
 - (당초)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로,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을 “감독 대상 공사 및 실비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들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임기만료전이라도”를 “임기만료 전이라도”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제6조제4항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을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 신설(제2조)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위촉) 방법 추가(제2조)
 - 울산광역시장의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활용하여 위촉 가능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법령조문 등 수정(제5조)
 - (당초) 영 제107조제5항 → (변경) 영 제107조제6항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도록 규정(제1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제1조, 제3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세
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
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책개발로”를 “시책개발”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의2”로,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착오에 의하여”를 “행정착오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외 조항 신설(제2조제3항제3호)
- 관계 법령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제1조~제3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 15일 미만”을 “월 15일 미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별표”를 “영 별표 2”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해당공무원”을 “해당 공무원”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를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시행) 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제3조의2)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강화(제4조제1항) : (당초) 2배 → (변경) 5배
-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제2조, 제3조, 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상생활속에서”를 “일상생활 속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제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도움 서비스 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민원(가사도움)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지원 근거 마련(제2조)
- 생활민원담당 중점 처리사항 중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 조정등 현행화(제4조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가임여성”을 “가임여성”으로,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를 “12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2의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다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의 호계문화체육센터란 다음에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화봉동 1484-2)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	------------------------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3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 탁구장은 제3호다목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 평일 : 06:00 ~ 22: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 평일 : 10:00 ~ 20: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4~5층 체육시설 조성(실내다목적구장, 농구장 등)에 따라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조항 변경(제2조제1호)
 - 상위 법령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인용하고, ‘체육센터’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관’으로 명칭 일치
-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 추가(별표 2)
 - 사용시간 : 평일 10:00~20: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10:00~20:00
 - 휴 무 일 : 현재 운영중인 관내 공공체육센터와 동일
-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추가(별표 3 제3호카목)
 -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 평일 10,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3,000원/시간
 - 농구장 : 평일 10,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3,000원/시간
 - 테니스(스크린) : 평일 18,000원/시간(10,000원/30분)
토·일·공휴일 23,000원/시간(13,000원/30분)
 - 테니스(블머신) : 평일 16,000원/시간(9,000원/30분)
토·일·공휴일 20,000원/시간(11,000원/30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1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농
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09호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
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
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2.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
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이 경우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

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년 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한”을 “「지하수법」 제27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년 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수위관측망”을 “측정망”으로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농정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구”를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인 「지하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1조,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다만,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③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국장 또는 보건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및 과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청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른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울산광역시시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시장, 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발생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제2조~제1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규정(제14조~제16조)
- 재난상황의 관리 규정(제17조~제23조)
- 다른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반영 조례구성 체계 표준화
-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 편성기준,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 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한다.

제5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에 따른”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

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제6조제1항 중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업무 담당국장” 을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업무” 를 “재난관리기금업무”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분의 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관리담당 주사가”를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잔임”을 “남은”으로 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제10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관직을 재정비하는 등 기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재정비(제3조)
- 기금의 용도 추가(제5조)
-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제8조)
-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제8조의2)
-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제3조 ~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

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구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

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소규모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9조(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건축물의 주소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유자 등의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7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성능저하가 없도록 성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유자 등의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실태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제3조, 제4조)
-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제6조)
- 지원기준(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1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2. 병역명문가 위문·격려
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 가문이 구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 병역 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병역명문가 예우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시행
- 예우 및 홍보(제4조)
 - 병역명문가와 가족에 대한 주요행사 초청, 위문격려, 사기 진작
 -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지원(제5조)
 - 구에서 설치·운영 또는 위탁한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14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를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 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을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를 “활동수당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활동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조항 개정(제6조제1항)
- 실적보고 규정 변경(제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제4조, 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1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를 “도서관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명촌동)
강동바다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62(산하동)
송정나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신규 조성되는 2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등 도서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도서관장 명시(제7조제2항)
- 신설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추가(별표 1)
 - 강동바다도서관 및 송정나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①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 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

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7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7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제13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만 해당한다.

제14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 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7조(지원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

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2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 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사유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따른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따른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사유	지원결정일	지원내용	징계결과	지원 취소 ·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지원결정일	지원내용	수사 및 소송결과	지원 취소 ·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및 시행('22. 12. 27.)으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제1조~제3조)

나. 적극행정 책임관 임무 및 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제4조, 제5조)

다. 지원 내용(제6조~제8조)

- 1)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및 선임
- 2) 지원신청 및 절차 안내

라. 지원 절차(제9조~제15조)

- 1)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 2) 위원회 상정·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마. 지원의 취소 및 반환(제16조~제18조)

- 1) 지원의 취소 및 변호인 선임비용 반환
- 2)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622호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와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

표 2와 같다.

② 본부장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1.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따른 분장 사무
2. 피해 시설의 기능
3. 재난 및 사고유형 등

제4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4
2.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5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할 경우 재난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제2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	1)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구 분	업무와 역할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구 분	업무와 역할
지원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선박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시·구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1항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 농수산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농수산과 농수산과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일자리과 - - 경제일자리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고	보건행정과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안전총괄과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도로터널 사고 4. 육상화물운송 사고 5. 도시철도 사고 6. 항공기 사고 7.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교통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농수산과 농수산과 농수산과 농수산과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
소방청	1. 화재·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장소별*재난수습주관부서 안전총괄과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농수산과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보건행정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복구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장소별: 고압가스(경제일자리과), 기업체 화재(경제일자리과), 유해화학물 누출·폭발화재(환경위생과), 공동주택 화재(건축주택과) 등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4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 당 관	통 제 관	총 괄 조 정 관	차장	본 부 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5조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분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5+a명		
	반 장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4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팀(4명)	· 재난상황관리반 4명 - 안전총괄과 직원 4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a+β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상황관리 총괄반 (9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9명)	· 재난상황관리반 9명 - 안전총괄과 직원 8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2+a+β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상황관리 총괄반 (11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11명)	· 재난상황관리반 11명 - 안전총괄과 직원 10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4+a명	
	반 장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팀(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안전총괄과 직원 3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7+α+β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상황관리 총괄반 (6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 - 안전총괄과 직원 5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9+α+β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상황관리 총괄반 (8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8명)	· 재난상황관리반 8명 - 안전총괄과 직원 7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5조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총괄팀(3명)	· 안전총괄과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과약팀(6명)	· 안전총괄과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국·소 소속 직원 등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6조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 재난	가.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1) 비상 1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 및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대설주의보 및 대설경보,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 비상 1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회 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또는 시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고: 재난상황별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단계의 기준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제1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제2조)
-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제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제4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제5조)
-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제6조)
-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제7조)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623호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를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를 “(기금의 확보 및 적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결산후 1월 이내”를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난관리기금용자신청서”를 “재난관리기금 용자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2에 따른”으로,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재난관리기금 용자결정통지서에 의하여”를 “재난관리기금 용자결정 통지서에 따라”로, “울산광역시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를 “3퍼센트”로, 같은 호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구금고”를 “구금고”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환기간전이라도”를 “상환기간 전이라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 까지에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채무자”를 “구청장은 채무자”로, “기타”를 “그 밖에”로, “연장하여 줄”을 “연장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30일전까지”를 “30일 전까지”로,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에 의하여”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융자금의”를 “융자금 대출·채권확보 및 융자금 상환 등 융자금의”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금고”를 각각 “구 금고”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용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재난위험 시설(지역)명			등급	_____ 급	
용자금 용도			거주사항	자가, 전세, 월세 등	
재산사항	천원(동산 : _____ 부동산 : _____)				
사업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총 임대금액	본인부담금	구용자금	기타
용자신청 금액	천원	용자희망일		담보능력	
용자기간			상환만기일		
<p>「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청인 : _____ (인)</p> <p><u>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u></p>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용자결정 통지서

1. 용자대상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재난 위협 시설	시설명			
	위치			
	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이주()		

2. 지원내용

자금 용도	총사업 (이주)비	용자 신청액	용자 결정액	용자조건		상환 조건	대출취급 금융기관
				대출기간	이자		
	천원	천원	천원	년 (거치년)	연리: %		

- 〈주〉 1. 연체이율은 연리 퍼센트로 한다.
2. 용자를 받은 사람은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용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용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2. 용자금 내역

- 사업구분 :
- 용자금액 :
- 상 환 액 :
- 상환차액 :

3. 상환기한 :

4. 연장기간 :

5. 연장사유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용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제2조, 제10조)
- 조문의 제목 등 정비(제3조)
- 기금의 용자신청 시 심의 기구 변경(제5조)
-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삭제 및 정비(제7조)
 - 용자금 상환에 관련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
- 용자업무의 구 금고 위탁 시 업무 구체화(제9조)
-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제4조 ~ 제9조, 제11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2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용시간) ① 각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09:00 ~ 18:00로 하며, 송정나래도서관은 예외로 한다.

1. 중앙·매곡·농소1동·농소3동·염포양정도서관의 자료실 이용시간은 09:00 ~ 20:00로 하고, 열람실은 22:00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기적의도서관과 강동바다도서관의 자료실 이용시간은 09:00 ~ 20:00로 한다.

3. 명촌어린이도서관의 자료실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하고, 열람실은 21:00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송정나래도서관의 자료실 이용시간은 10:00 ~ 18:00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하고, “울산광역시 구립도서관장”을 “구립도서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를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회원”을 “회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7세 미만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2. 11. 21, 14. 12. 22, 17. 1. 26., 20. 9. 3. 22. 3. 31., 23. 7. 6.>
 [앞면]

회원가입(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결	담당자	담당	관장
*회원종류(√ 표시) : <input type="checkbox"/> 도서관회원 <input type="checkbox"/> 책이음회원 <input type="checkbox"/> 가족회원				재		“전결”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휴대전화		*집전화					
소속 (학교 직장 등)	※ 문자서비스(문자메시지)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는 필수항목입니다.

※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가족회원 등록시 기재요망	※ 가족ID부여번호(관리자용) : _____ 발급형태(가입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탈퇴 <input center;"="" text-align:=""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 성명							관계	생년월일	대출자번호		동의(서명)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에 회원가입(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하며,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지키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에 동의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증 (재)발급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주민등록등본(17세 미만의 경우) -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 가족회원 신청 시 가족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도서관회원증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과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책이음이용증은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대출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만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가족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연체중 가족구성원이 있을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제한합니다.
-------------	---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도서관회원

책이음회원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증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함) 및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증 발급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식별,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집전화)
나. 선택항목 : 학교 · 직장명
다. 사용 중 생성 항목 : 대출자번호, 성별, 관리구분, 소속 코드, 직급코드, 회원구분, 가입자료실, 우편발송지역,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제적일자, 대출정지일, 대출정지회원사유, 회원증분실여부, 회원증발급횟수, 현재대출권수, 현재연체권수, 누적연체횟수, 누적연체일, 본인확인코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가. 구립도서관 회원 가입 시 가입 도서관에서 개인정보 수집 후 구립도서관 및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서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나.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현황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sbl.bukgu.ulsan.kr>)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증으로 구립도서관 및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 개인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휴대전화, 자택, 근무지), 학교 · 직장명, E-mail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증으로 모든 참여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는 회원 개인을 식별하고, 책이음서비스의 제공, 정보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집전화)
나. 선택항목 : 학교 · 직장명
다. 사용 중 생성 항목 : 대출자번호, 성별, 관리구분, 소속 코드, 직급코드, 회원구분, 가입자료실, 우편발송지역,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제적일자, 대출정지일, 대출정지회원사유, 회원증분실여부, 회원증발급횟수, 현재대출권수, 현재연체권수, 누적연체횟수, 누적연체일, 통합회원여부, 본인확인코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가. 책이음가입 시 가입도서관에 개인정보 수집 후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참여도서관 중 이용하지 않은 도서관을 최초 이용하는 시점에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나. 참여도서관 및 개인정보 제공현황은 책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book.nl.go.kr>)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회원 식별, 관리 및 책이음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정보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대출자번호, 본인확인코드,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나. 참여도서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휴대전화, 자택, 근무지), 학교 · 직장명, E-mail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필요한 본인확인서비스(본인명의 휴대폰, 인터넷 주민번호대체번호)에 등록되지 않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확인"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본인 : 성명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구립도서관 및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정보공유 (제3자제공)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책이음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정보공유(제3자제공)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명 : _____ 신청인 : _____ (서명)
 _____ (서명)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2. 11. 21., 21. 3. 4. 22. 3. 31., 23. 7. 6.>

수 강 신 청 서				접수번호	
*는 필수항목					
강 좌 명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남 □여)
	*주 소				
	*연락처	*자 택		보호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학 교			학과/학년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출석부 기재, 각종 프로그램관련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수 강 종			
강 좌 명		접수번호	
성명(생년월일)		주 소	
수 강 기 간		강좌장소	
그 밖의 사 항		문 의 처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p>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08. 6. 2., 21. 3. 4., 22. 3. 31., 23. 7. 6.>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성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단체)		연락처	
주 소					
행 사 의 명 칭					
행 사 의 내 용					
사용기간 및 시간	부터 :	년	월	일	시 일 시간 회)
	까지 :	년	월	일	시
사 용 시 설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도서관 부속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속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도서관 부속시설사용을 신청(변경) 하오니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행사계획표 1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신설된 도서관의 이용시간을 추가하고, 도서관 회원가입 시 필요한 신분증 추가 및 회원가입 신청서 자구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된 도서관 이용시간을 추가하고, 도서관별 이용시간을 알기 쉽게 정비 (제3조)
- 도서관 회원가입 시 필요한 신분증 등 자구 수정(제5조제2항제1호)
-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제7호서식, 제1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폐지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3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폐지훈령

울산광역시 북구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동안 운영되었던 규정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폐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23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²)	결정(변경) 사유
명촌천	화 봉 천	울산광역시 복구 송정동 1138천 외 38필지	35,557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소하천구역 변경
	화 산 천	울산광역시 복구 화봉동 1594천 외 18필지	17,170	
	화 동 천	울산광역시 복구 화봉동 11475-3천 외 29필지	25,531	

첨부서류: 1.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사

2.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 화봉천 소하천구역 토지세목(1/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시	구	동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울산	북	송정	113 8		천	106	106		울산광역시 북구
2	울산	북	송정	113 7		천	1,087	1,087		울산광역시 북구
3	울산	북	송정	140 0		천	3,674	3,674		울산광역시 북구
4	울산	북	송정	139 9		천	304	304		울산광역시 북구
5	울산	북	송정	139 8		천	3,598	3,598		울산광역시 북구
6	울산	북	송정	139 7		천	373	373		울산광역시 북구
7	울산	북	송정	139 6		천	1,131	1,131		울산광역시 북구
8	울산	북	송정	139 5		천	353	353		울산광역시 북구
9	울산	북	송정	139 4		천	3,843	3,843		울산광역시 북구
10	울산	북	송정	139 3		천	278	278		울산광역시 북구
11	울산	북	송정	72	2	답	1	1		소유자불명
12	울산	북	송정	139 2		천	1,974	1,974		울산광역시 북구
13	울산	북	송정	110 2	2	천	24	24		울산광역시
14	울산	북	송정	110 4	58	천	893	893		국(환경부)
15	울산	북	송정	110 4	15	천	277	277		국(환경부)
16	울산	북	송정	110 4	16	천	634	634		국(환경부)
17	울산	북	송정	110 4	64	천	67	67		국(환경부)
18	울산	북	송정	110 4	59	천	1,490	1,490		국(환경부)
19	울산	북	송정	110 4	60	천	109	109		국(환경부)
20	울산	북	송정	110 4	62	천	1,273	93		국(환경부)

■ 화봉천 소하천구역 토지세목(2/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시	구	동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21	울산	북	송정	110 4	61	천	31	31		국(환경부)
22	울산	북	화봉	147 5		천	1,932	234		울산광역시 북구
23	울산	북	화봉	160 3		천	3,619	3,619		울산광역시 북구
24	울산	북	화봉	160 2		천	294	294		울산광역시 북구
25	울산	북	화봉	159 4		천	7,358	3,322		울산광역시 북구
26	울산	북	화봉	159 3		천	328	328		울산광역시 북구
27	울산	북	화봉	159 2		천	795	795		울산광역시 북구
28	울산	북	화봉	159 1		천	369	369		울산광역시 북구
29	울산	북	화봉	159 0		천	3,404	3,404		울산광역시 북구
30	울산	북	화봉	158 9		천	216	216		울산광역시 북구
31	울산	북	화봉	158 8		천	1,819	1,819		울산광역시 북구
32	울산	북	화봉	68	1	천	37	37		울산광역시
33	울산	북	화봉	산3 6	7	임	8,053	348		국(산림청)
34	울산	북	화봉	산3 6		임	60,48 8	13		국(산림청)
35	울산	북	화봉	무지 번		무	303	303		-
36	울산	북	화봉	무지 번		무	52	52		-
37	울산	북	송정	무지 번		무	7	7		-
38	울산	북	송정	무지 번		무	16	16		-
39	울산	북	송정	무지 번		무	43	43		-

■ 화산천 소하천구역 토지세목(1/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시	구	동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울산	북	화봉	159 4		천	7,358	4,036		울산광역시 북구
2	울산	북	화봉	159 5		천	532	532		울산광역시 북구
3	울산	북	화봉	159 6		천	7,663	7,663		울산광역시 북구
4	울산	북	화봉	159 7		천	540	540		울산광역시 북구
5	울산	북	화봉	159 8		천	1,214	1,214		울산광역시 북구
6	울산	북	화봉	159 9		천	234	234		울산광역시 북구
7	울산	북	화봉	160 0		천	1,760	1,760		울산광역시 북구
8	울산	북	화봉	128 4	1	구	629	294		국(국토교통 부)
9	울산	북	화봉	68	4	천	69	69		울산광역시
10	울산	북	화봉	68	3	천	276	276		울산광역시
11	울산	북	화봉	128 4	5	구	18	18		국(환경부)
12	울산	북	화봉	71		임	76	76	울산 북구 화봉동 72	**이씨부정 공파문회
13	울산	북	화봉	128 4	2	구	39	39		국(국토교통 부)
14	울산	북	화봉	산3 5	2	임	7,628	54	울산 북구 화봉동 72	**이씨사청 문회
15	울산	북	화봉	산3 5	19	임	112	112	울산 북구 화봉동 72	**이씨부정 공파문회
16	울산	북	화봉	산3 5	8	임	353	201		국(국토교통 부)
17	울산	북	화봉	산3 5	17	임	682	42		국(국토교통 부)
18	울산	북	화봉	산3 5	10	임	1,211	10		국(국토교통 부)
19	울산	북	화봉	무지 번		무	6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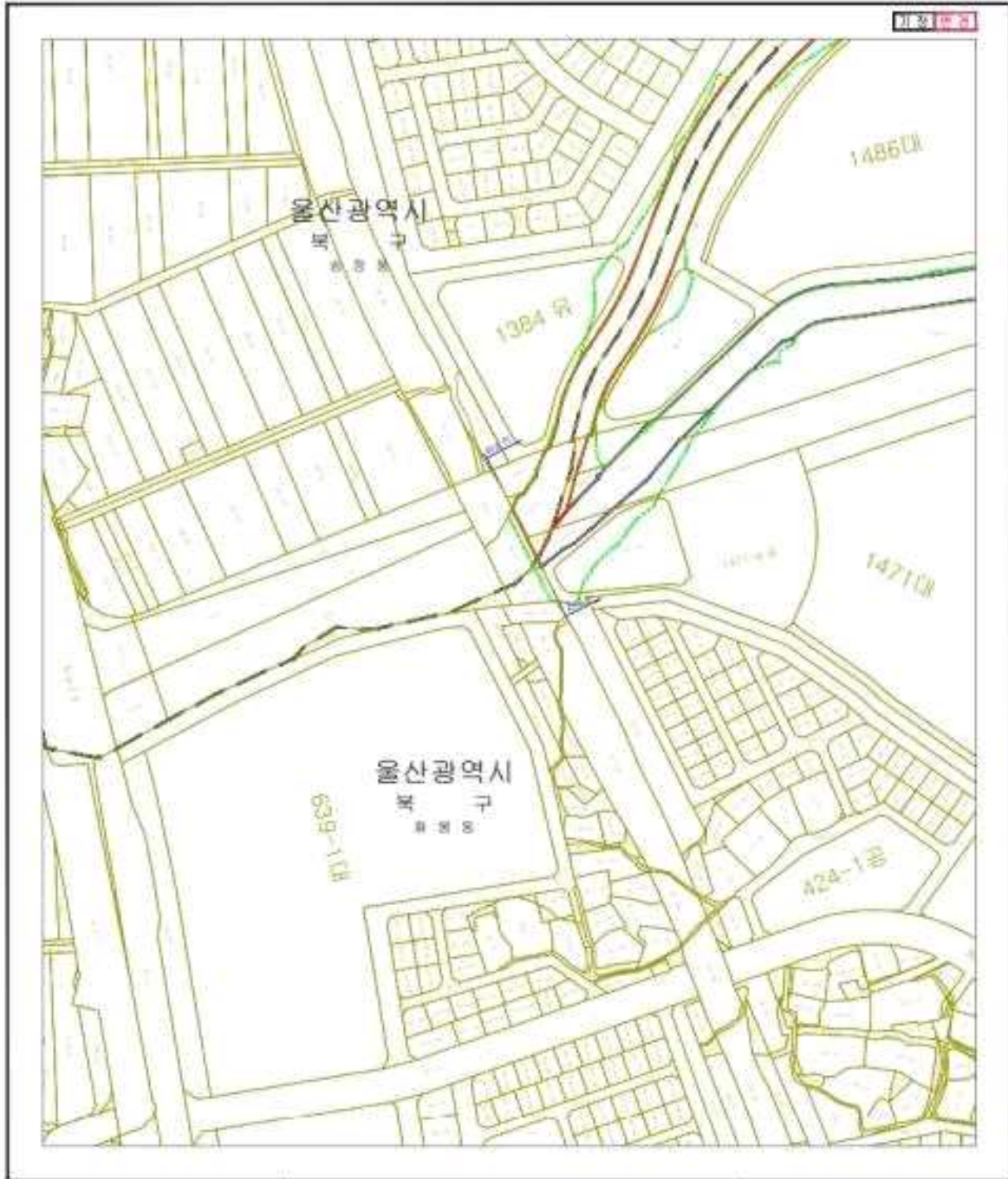
■ 화동천 소하천구역 토지세목(1/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시	구	동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울산	북	화봉	147 5	3	천	407	407		울산광역시 북구
2	울산	북	화봉	147 5		천	1,932	1,698		울산광역시 북구
3	울산	북	화봉	160 4		천	9,743	9,743		북구(울산광 역시)
4	울산	북	화봉	160 5		천	528	528		북구(울산광 역시)
5	울산	북	화봉	158 7		천	7,267	7,267		북구(울산광 역시)
6	울산	북	화봉	158 6		천	607	607		북구(울산광 역시)
7	울산	북	화봉	158 5		천	1,281	1,281		북구(울산광 역시)
8	울산	북	화봉	158 4		천	119	119		북구(울산광 역시)
9	울산	북	화봉	158 3		천	1,411	1,411		북구(울산광 역시)
10	울산	북	화봉	68	8	도	5	5		울산광역시
11	울산	북	화봉	68	7	천	17	17		울산광역시
12	울산	북	화봉	68	10	도	99	35		울산광역시
13	울산	북	화봉	68	6	천	6	6		울산광역시
14	울산	북	화봉	68	9	천	1	1		울산광역시
15	울산	북	화봉	129 3	5	도	136	35		국(국토교통 부)
16	울산	북	화봉	68	11	도	906	29		울산광역시
17	울산	북	화봉	128 6	1	구	91	91		국(국토교통 부)
18	울산	북	화봉	128 9	33	구	317	263		국(환경부)
19	울산	북	화봉	128 9	15	구	246	112		국(환경부)
20	울산	북	화봉	128 7	1	도	18	18		국(국토교통 부)

■ 화동천 소하천구역 토지세목(2/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시	구	동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21	울산	북	화봉	41	1	답	204	71	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이*우
22	울산	북	화봉	41		답	276	70	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이*우
23	울산	북	화봉	128 7		도	174	33		국(국토교통부)
24	울산	북	화봉	128 9	14	구	1,719	1,374		국(국토교통부)
25	울산	북	화봉	30		종	2,291	104	울산 북구 화봉동 30	대한불교조계종도**
26	울산	북	화봉	28		구	108	108		울산광역시 북구
27	울산	북	화봉	128 9	30	구	88	18		국(환경부)
28	울산	북	화봉	27		구	189	4		울산광역시 북구
29	울산	북	화봉	27	1	전	36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최*곤
30	울산	북	화봉	무지번		무	10	10		-

화봉천, 화산천, 화동천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3호
 2023. 07. 06.
 공보 변경사항에 따라 수정함

- 범 례**
- 지적선
 - 소하천구역 (방정)
 - 소하천구역 (변경) - 화봉천
 - 소하천구역 (변경) - 화산천
 - 소하천구역 (변경) - 화동천

결정권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결정일자 : 2023. 07. 06.
 고시년도 : 2023. 07. 06.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3호
 작성자 : (주)경동엔지니어링
 작성일자 : 2023. 07. 06.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울산광역시청 북구청장

INDEX

축척 1 : 1,2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화봉천, 화산천, 화동천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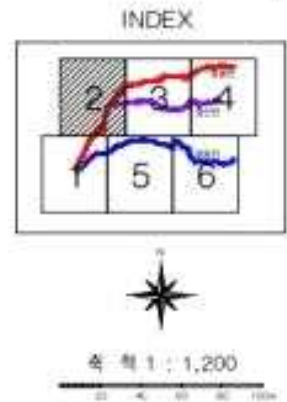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3호
 2023. 07. 06.
 국토·인문환경청 토지이용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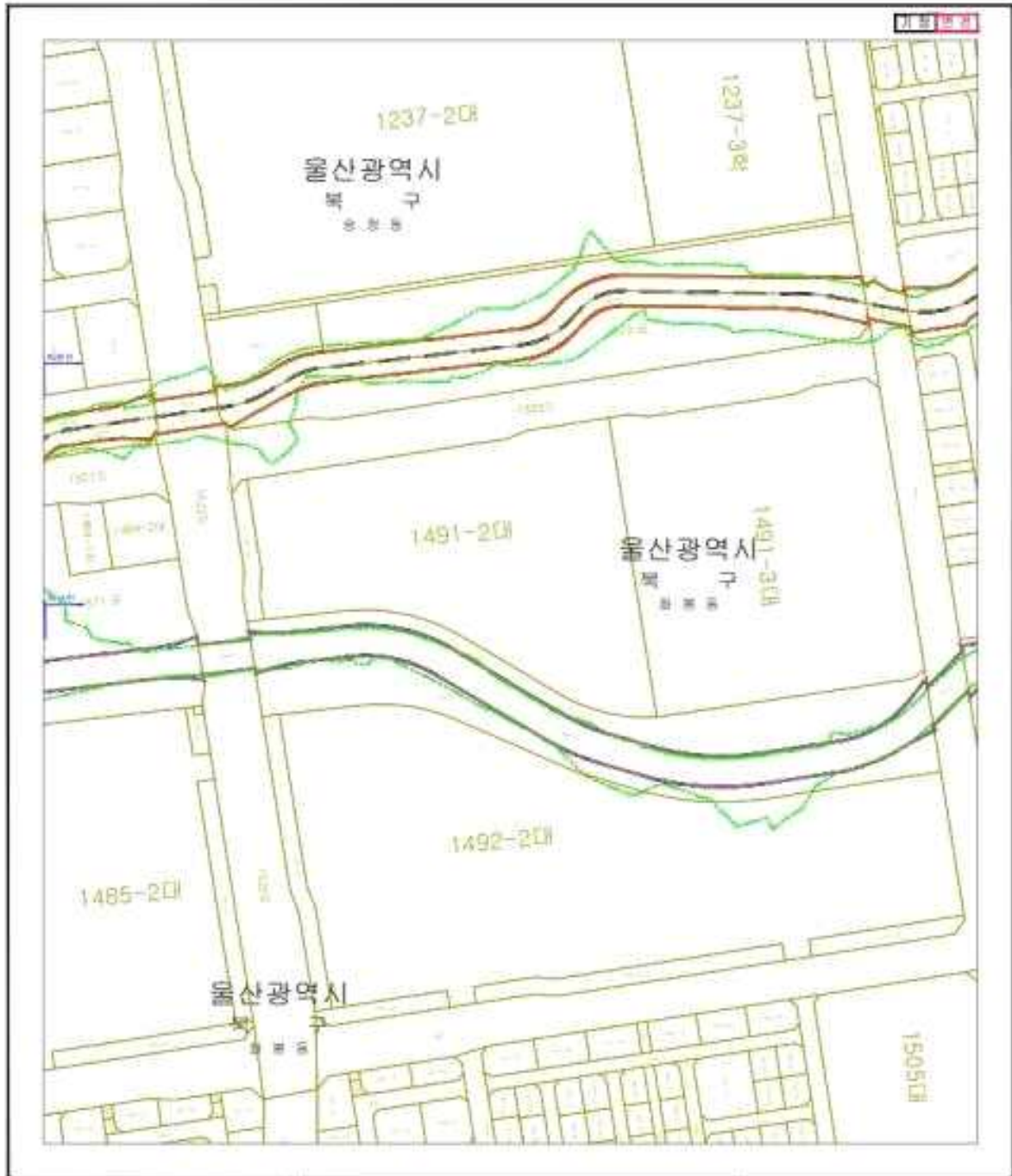
범례

	지적선
	소하천구역 (당초)
	소하천구역 (변경) - 화봉천
	소하천구역 (변경) - 화산천
	소하천구역 (변경) - 화동천

결정권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결정일자 : 2023. 07. 06.
 고시년도 : 2023. 07. 06.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3호
 작성자 : (주)경동엔지니어링
 작성일자 : 2023. 07. 06.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울산광역시청 북구청장



화봉천, 화산천, 화동천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3)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3호
 2023. 07. 06.
 구역 변경구역에 관해 하도급

- 범 례**
- 지적 선
 - 소하천구역 (참조)
 - 소하천구역 (변경) - 화봉천
 - 소하천구역 (변경) - 화산천
 - 소하천구역 (변경) - 화동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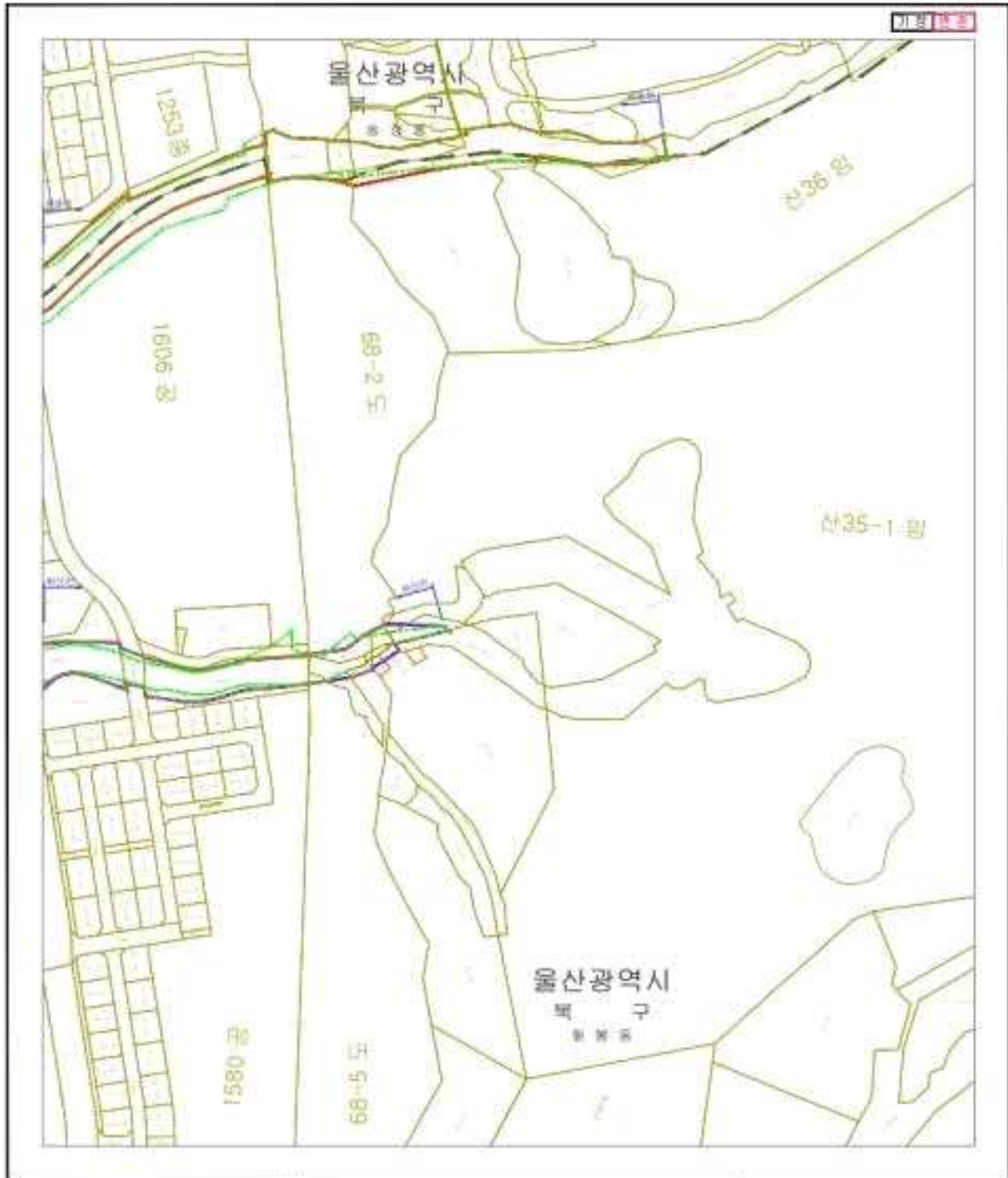
결정권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결정일자 : 2023. 07. 06.
 고시년도 : 2023. 07. 06.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3호
 작성자 : (주)경동연치니아형
 작성일자 : 2023. 07. 06.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울산광역시청 북구청장

INDEX

N

축 척 1 :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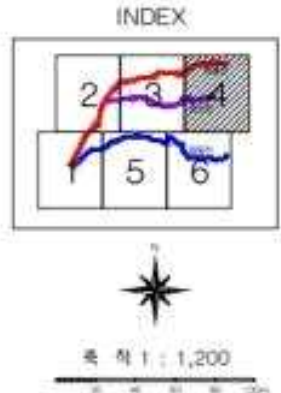
화봉천, 화산천, 화동천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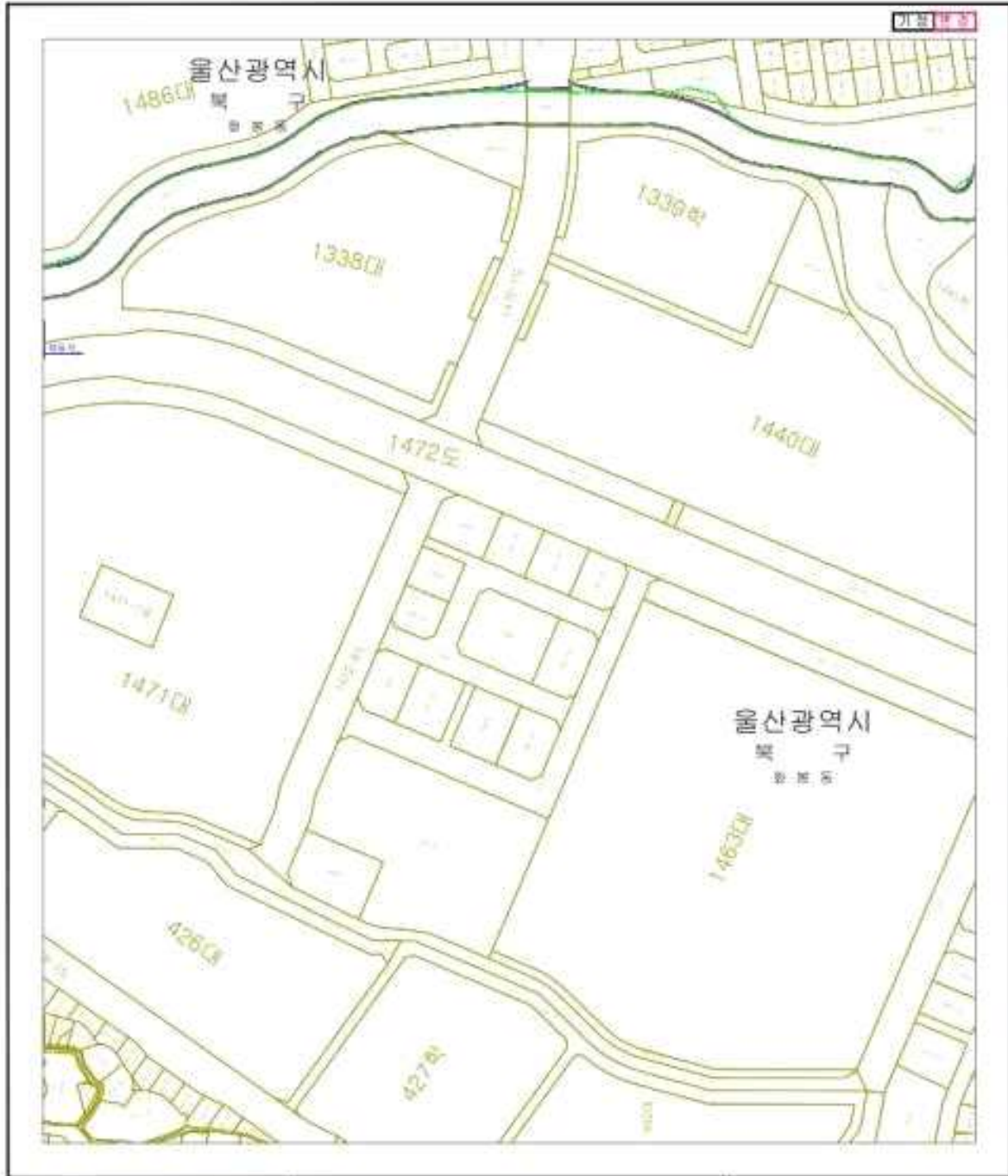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3호
 2023. 07. 06.
 고지 변경유감에 관해 각오함

- 범 령**
- 지 역 선
 - 소하천구역 (유출)
 - 소하천구역 (변경) - 화봉천
 - 소하천구역 (변경) - 화산천
 - 소하천구역 (변경) - 화동천

결정권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결정일자 : 2023. 07. 06.
 고시년도 : 2023. 07. 06.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3호
 작 성 자 : (주)경동엔지니어링
 작성일자 : 2023. 07. 06.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울산광역시청 북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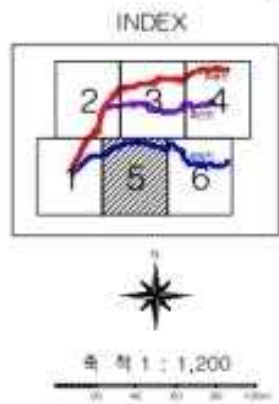
화봉천, 화산천, 화동천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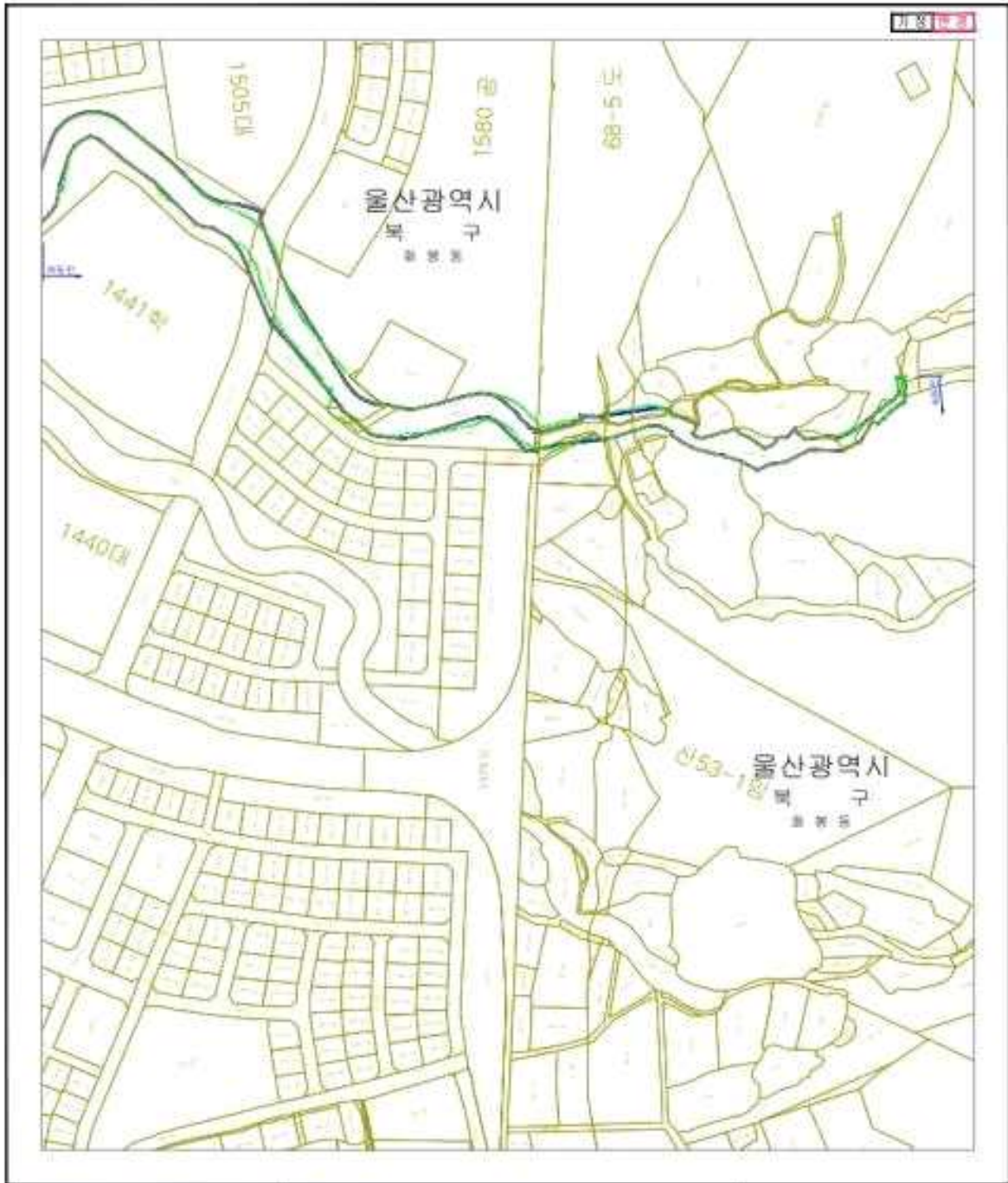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3호
 2023. 07. 06.
 공회 행정안전에 의해 등록됨

결정권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결정일자 : 2023. 07. 06.
 고시년도 : 2023. 07. 06.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3호
 작성자 : (주)경동엔지니어링
 작성일자 : 2023. 07. 06.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울산광역시청 북구청장

- 범례**
- 지적선
 - 소하천구역 (당초)
 - 소하천구역 (변경) - 화봉천
 - 소하천구역 (변경) - 화산천
 - 소하천구역 (변경) - 화동천



화봉천, 화산천, 화동천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3호
 2023. 07. 06.
 일부 변경부문에 한해 국유지

- 범 례**
- 좌측선
 - 소하천구역 (당초)
 - 소하천구역 (변경) - 화봉천
 - 소하천구역 (변경) - 화산천
 - 소하천구역 (변경) - 화동천

결정권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결정일자 : 2023. 07. 06.
 고시년도 : 2023. 07. 06.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3호
 작성자 : (주)경동엔지니어링
 작성일자 : 2023. 07. 06.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울산광역시청 북구청장

INDEX

축 척 1 : 1,2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3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6. 30.
2. 점용·사용의 목적 :
 - 당초 : 인공구조물 설치(투수블럭 포장)
 - **변경** : 인공구조물 설치(콘크리트 포장)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1339-2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29m²
 - 나. 기 간
 - 당초 ㄱ 일시점용 : 2022. 9. 20. ~ 2023. 9. 19.
 - ㄴ 영구점용 : 2023. 9. 20. ~ 2028. 5. 31.
 - **변경** ㄱ 일시점용 : 2023. 6. 30. ~ 2023. 9. 19.
 - ㄴ 영구점용 : 2023. 9. 19. ~ 2028.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농수산과)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6. 30.
2. 점용·사용의 목적 : 경작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시례동 659-18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354m²
 - 나. 기 간 : 2023. 6. 30. ~ 2028.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정경*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시례동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35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제20조에 의하여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기간 : 7. 6.(목) ~ 7. 20.(목)
2. 모집인원 : 17명
3. 자격요건
 - 건축, 도시, 조경, 토목, 교통, 문화, 농림, 디자인, 옥외광고, 조명,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신청서식 :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게재 및 북구청 도시과 비치
5. 접수처 및 방법
 - 접 수 처 : 북구청 도시과(전략사업담당)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메일(jihe0601@korea.kr)
 - ※ 우편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도시과
6. 주요역할
 -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7. 제외대상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위원 선정일 기준)
 -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된 사람
 - ※ 울산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제4항 :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아야 한다.
 - 품행이 단정하지 않거나 공익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과(☎(052)241-792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학 력	
주 소	울산광역시		
직장(직업) 및 전화번호	직장명(직업) :		직위:
	☎ 직장 :	자택 :	휴대폰 :
E-mail	<u>※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u> E-mail :		
주요경력	○ ○ ○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및 체납세 확인 조회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시까지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빈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관위원회 위원 신청서로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위한 위원 신청, 선발, 활동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직업

나. 선택항목 : 주요경력, E-mail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신청 시 ~ 임기만료 시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위원 위촉을 제한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2. 수집·이용과 관련된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동일

3.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위원 위촉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 신청 및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36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조나영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광남6길 16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매곡천
점용 내용	공연	점용 면적	33m ²
점용 기간	2023. 7. 23. (일) 13:00 ~ 19:0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 - 940호

울산 북구 천곡동 00빌딩 신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7. 3.(월) ~ 2023. 7. 11.(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p>가. 사업명 : 울산 북구 천곡동 00빌딩 신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배진근</p> <p>다. 시공자 : 삼대종합건설(주)</p> <p>라. 설계자 : (주)행복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p> <p>마. 감리자 : (주)행복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p> <p>바.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 175번지 ○ 대지면적 : 2,320.00㎡ ○ 연면적 : 3,918.39㎡ ○ 규모 : 지상5층, 1개동 ○ 세대수 : 해당없음 ○ 공사기간 : 2023. 07.15. ~ 2023. 12. 30(5개월) ○ 허가일 : 2019. 12. 12. ○ 착공신고수리일 : 2023. 6. ○ 공사비 : 1,100,000,000 원 (V.A.T 제외) <p>사. 안전점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비용 : 4,000,000원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금액 : 4,400,000원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 금액

3. 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외	2	2,000,000	4,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계	2		4,0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3. 7. 3.(월)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3. 7. 11.(화) 17: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3. 7. 12.(수) 13: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3. 7. 12.(수) 13:00까지

※ 적격심사대상이므로 확인서류 필히 제출(미제출 시 자격 미달로 선정제외)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3. 7. 13.(목)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48호(2023. 3. 3.)**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지정 및 단독입찰일 경우 단독입찰 한 자 선정. 단,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있는

자료 한정

-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중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2)로 문의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1. 총괄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p>평가점수</p> $\circ \text{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p>*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p>○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p> $\ast \text{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p>
합계	10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0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준용

[별표 2-1]

■ 5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50																					
자격점수	25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 특급기술인 : 25점 - 고급 기술인 이하 : 실격																				
교육훈련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 교육이수 : 25점 - 교육 미이수 : 실격																				
2. 신용도	50																					
부실벌점	20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등	20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10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회사채</td> <td>BBB- 이상</td> <td>BBB- 이상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 이상</td> <td>A3- 미만 B- 이상</td> <td>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9</td> <td>8</td> <td>0</td> </tr> </table>	회사채	BBB-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	9	8	0
회사채	BBB-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	9	8	0																		
총 계	100																					

[별표 2-2]

■ 5천만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5											
책임기술인			25											
사업책임 (30점)	자 격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경 력	년수	13	<table border="1"> <tr>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9년 이상</td> <td>9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7년 이상</td> <td>7년 미만</td> </tr> <tr> <td>13</td> <td>11.7</td> <td>10.4</td> <td>9.1</td> <td>7.8</td> </tr> </table>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9건 이상</td> <td>9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분야별 책임기술인			30											
분야별 책임 (25점)	등 급	해당분야	6	<table border="1"> <tr> <td>특급기술인</td> <td>고급기술인</td> <td>중급기술인</td> <td>초급기술인</td> </tr> <tr> <td>6</td> <td>6</td> <td>5.5</td> <td>5</td> </tr> </table>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경 력	년수	12	<table border="1"> <tr> <td>7년 이상</td> <td>7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 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5건 이상</td> <td>5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최근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건수	25	<table border="1"> <tr> <td>5건 이상</td> <td>5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 3건 이상</td> <td>3건 미만 2건 이상</td> <td>2건 미만</td> </tr> <tr> <td>25</td> <td>22.5</td> <td>20</td> <td>17.5</td> <td>15</td> </tr> </table>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다. 신용도			10											
	부실벌점	절대평가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정지 등		절대평가	3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등급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회 사 채</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 이상</td> <td>A2- 미만 A3- 이상</td> <td>A3- 미만 B- 이상</td> <td>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라.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6월 미만</td> <td>6월 이상 9월 미만</td> <td>9월 이상 12월 미만</td> <td>12월 이상 15월 미만</td> <td>15월 이상</td> </tr> <tr>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6.0	5.4	4.8	4.2	3.6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6월 미만</td> <td>6월 이상 9월 미만</td> <td>9월 이상 12월 미만</td> <td>12월 이상 15월 미만</td> <td>15월 이상</td> </tr> <tr>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able>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4.0	3.6	3.2	2.8	2.4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4.0	3.6	3.2	2.8	2.4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

접수번호	
------	--

원본, 부분 구분 표기

사업명 : 000 ~ 000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3.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수행기관명

[서식 2]

수행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건축주택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분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3부. 끝.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인		000000-***** (만00세)				특급자격취 득일: '00.00 .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000000-***** (만00세)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의 자격을 갖춘 자 이
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4]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전 공 (학 위)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 분야 전체 경력		년 월	비 고		
기 간	년 월	업 체 명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참여 기간	참여 일수	용역명	발주자	공사 종류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가중치	환산 일수

3. 해당분야 실적

하천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 월)	담당 업무	소속 회사	직위	발주청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 ~ ...	비 고 (주)
점 수				

-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한다.
- ※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같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 한 것으로 처리한다.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1부만 첨부한다.
-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한다.
-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 교육기간에서의 1주란 5일 이상이고 교육시간이 35시간 이상을 말함
-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1·2종 시설물 여부	과업 개요	과업기간 (년 월)	준공금액 (천원)	지분율 (%)	적용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 . ** . ** ~ ** . ** . ** (년 월)					
2				** . ** . ** ~ ** . ** . ** (년 월)					
	계	건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준공실적에 한하며, 연도란에 “○년 ○월○일~○년○월○일”로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과업 개요란 에는 용역 수문 규격(H*B*련)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자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6]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역명	발주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건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련규정	처분청	비고
수 행 기 관			. . ~ . . (월)				
			. . ~ . . (월)				
	계						
참 여 기술인			. . ~ . . (월)				
			.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8]

별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별점점수 (점)	누계평균 별점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수 행 기 관							
		소계					
참 여 기 술 인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별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별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별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별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별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별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10]

참여기술인 업무 증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계	건							
	합계								

※ 용역업무 참여현황에는 타 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중인 용역만 작성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해당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

[서식 11-1]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미만)

□ 회사명 : ○○○○○○○(100%)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50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5	
2. 신용도	계	50	
	부실벌점	20	
	업무정지 등	20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계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 신용도	계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설도(신용평가등급)		

[서식 11-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이상)

□ 회사명 : ○○○○○○○(100%)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책임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 건 수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건 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건 수			
3. 신용도	계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건수)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건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실 적(건수)			
3. 신용도	계		
	점점·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인정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가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공 사 명	울산 북구 천곡동 00빌딩 신축공사		
2. 시 공 사	삼대종합건설(주)		
3. 발 주 자	배진근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행복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5. 공사개요			
현장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 175	공사기간	2023.07.15~2023.12.30
공사내용	규모: 지상5층 용도: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0]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7. 안전점검 내용	거푸집등바리5M 이상공사(2회)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삼대종합건설(주)	대 표 자 (생년월일)	김 형 우
		법인등록번호	181211-0037892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6길 29 1001호		전화번호 052-243-6642
직무분야	건축분야 [0] 토목분야 [0] 종합분야 []		등록번호 07-0076 자격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3 년 06 월 28 일

입찰자(대표자) 삼대종합건설(주)대표이사 김형우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에 따른 각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34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에서 발주(인·허가 사항 포함)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3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건축4, 종합2

연번	수행기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분야	비고
1	산업안전관리(주)	윤영만	제174호	종합	
2	오름구조안전기술원(주)	박대준외1	울산 제14호	토목(항만), 건축	
3	(주)하이콘엔지니어링	신상훈	울산 제10호	건축	
4	(주)세명구조엔지니어링	강경원외1	울산 제5호	건축	
5	(주)오에스엔지니어링	한진원	제274호	건축	
6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태석	울산 제24호	종합	

상대평가대상(부) 전라중 00000 신축공사	제1장 공사개요	계정번호: 00
	1.3 전체 공정표	계정일자: 2023. 04 확 아 자: 31

1.3.1 전체 공정표

[첨부 1-3-1-1-01] 전체 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육구 천축물 00000 신축공사

공사기간 : 2023년 07월 ~ 2024년 03월

공종	2023년												2024년			비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토공사															
흙주공사	흙주공사															
초격공사	초격공사															
방수공사	방수공사															
피막공사	피막공사															
다짐공사	다짐공사															
장축공사	장축공사															
합성공사	합성공사															
수장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도장공사															
조경공사	조경공사															
보난방공사	보난방공사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전기통신공사															
수형설비공사	수형설비공사															
TV설치공사	TV설치공사															
중공경도 및 콘크리트	중공경도 및 콘크리트															
특기사항	공사일정은 천재지변, 자재 등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일정이 변경될수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9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북구 어물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0호 (2023. 2. 2.) 내용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 나. 명 칭: 어물동 북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일원
3. 사업규모(변경)
 - 가. 당 초: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L=1,887m, B=6.0m, A=18,471m²)
 - 나. **변 경**: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L=1,887m, B=6.0m, A=18,460.9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명세서와 같음(변경)
7. 열람기간: 공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 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휴대폰) (일반전화)

제출의견

※ 이의신청 내용이 많을 경우 뒷면에 기재하시거나 별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2023년 월 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공사명 : 어물동 북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m)	면적 및 수량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구분	
1	어물동	1240-148	정자	기와, 옥재	39.5 m ²	국토교통부					
2	어물동	1240-148	창고	블록, 조립식	1.7 m ²	국토교통부					
3	어물동	1240-8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393.7 m ²	기획재정부					
4	어물동	1240-148	창고	블록, 조립식	4.8 m ²	국토교통부					
			펌프		2.0 EA						
5	어물동	441-2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108.6 m ²	박우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213				
6	어물동	1240-23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13.8 m ²	기획재정부					
7	어물동	519-2	화장실	블록, 슬라브	3.6 m ²	오경애	울산 중구 남의동 104-2 오색빌라 비동 202호				
			담장	H= 1.0m	15.4 n						
			대문		1.0 EA						
8	어물동	1256	창고	스레트, 조립식	44.2 m ²	국토교통부					
			담장	H= 1.0m	18.1 n						
9	어물동	974-1	창고	블록	6.5 m ²	박승동 한양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송팔3길 19-10, 105동 1003호 (어물목아파트)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21.8 m ²						
			헬스	H= 1.0m	57.7 n						
10	어물동	974	주택	조립식	48.3 m ²	박승동 한양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송팔3길 19-10, 105동 1003호 (어물목아파트)				
11	어물동	440-1	헬스	H= 1.0m	23.1 n	강말남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 19길 14, 1동 105호(반구동, 아담아파트)				
12	어물동	440	헬스	H= 1.0m	29.3 n	표세봉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개로 249, 1308호(대암동, 한양아이클래스)				
13	어물동	931	헬스	H= 1.0m	38.6 n	완수자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450, 109동 2104호(서부동, 성원상려빌아파트)				
14	어물동	929	헬스	H= 1.0m	41.8 n	임정자	울산 중구 동부동 150 현대패밀리 동부아파트 111동 1003호				
15	어물동	921-1	헬스	H= 1.0m	46.3 n	이영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수산길 514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	구	동	본번	부번		임부	면적	성명	지분	관리구분	성명	주소	
1	부산	북	어룡	1240	148	전	110,640	8,222	국(국토교통부)					
2	부산	북	어룡	산 105		임	13,289	17	밀양박씨인민회 공전회 대표자 박영하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동 683-7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582번길10, 대미동 2102호 (과외부, 과외여서외사태비)		
3	부산	북	어룡	425	7	과	369	1	이명철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761-3		
4	부산	북	어룡	1240	2	전	225	55	국(국토교통부)					당초
4	부산	북	어룡	1240	2	전	225	50	국(국토교통부)					변경
5	부산	북	어룡	425	6	과	1,995	19	이명철			울산광역시 북구 아룡1길 34-1		
6	부산	북	어룡	1240	6	임	93	7	국(기획재정부)					당초
6	부산	북	어룡	1240	6	임	93	9	국(기획재정부)					변경
7	부산	북	어룡	1240	4	전	291	27	국(국토교통부)					당초
7	부산	북	어룡	1240	4	전	291	21	국(국토교통부)					변경
8	부산	북	어룡	1240	3	전	370	1	국(국토교통부)					
9	부산	북	어룡	1240	5	도	988	741	국(국토교통부)					당초
9	부산	북	어룡	1240	5	도	988	742	국(국토교통부)					변경
10	부산	북	어룡	1240	8	임	859	197	국(기획재정부)					당초
10	부산	북	어룡	1240	8	임	859	205	국(기획재정부)					변경
11	부산	북	어룡	1240	9	임	106	52	국(기획재정부)					당초
11	부산	북	어룡	1240	9	임	106	53	국(기획재정부)					변경
12	부산	북	어룡	1240	10	전	314	89	국(기획재정부)					당초
12	부산	북	어룡	1240	10	전	314	101	국(기획재정부)					변경
13	부산	북	어룡	산 17	3	임	8,033	78	박대호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울산중앙지점)	
14	부산	북	어룡	438		전	298	230	임명훈			울산광역시 북구 아룡1길 28-6(어룡동)		
15	부산	북	어룡	439		담	1,071	13	임명훈			울주군 강동면 어룡리 58		
16	부산	북	어룡	440	1	담	305	141	강왕남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9길 14, 1동 105호(반구동, 아담아파트)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	구	동	산	번		부번	공부	관	성명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17	울산	북	어물	440		담	528	159	표세봉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9, 1308호 (매암동, 한양아아플래스)		근저당권	방어진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85 (일산동)(영토지정)	
18	울산	북	어물	441	1	담	403	193	이규철	울산군 강동면 어물리 518					
19	울산	북	어물	441	3	전	476	64	박시경					등기무없음	
20	울산	북	어물	441	2	찬	136	110	박두수	어물리213				등기무없음	
21	울산	북	어물	1240	20	전	205	2	국(기획재정부)						
22	울산	북	어물	1240	23	전	364	180	국(기획재정부)						당초
22	울산	북	어물	1240	23	전	364	175	국(기획재정부)						변경
23	울산	북	어물	1240	24	일	69	25	국(기획재정부)						
24	울산	북	어물	1240	25	전	390	81	국(기획재정부)						
25	울산	북	어물	1240	26	전	354	174	국(기획재정부)						당초
25	울산	북	어물	1240	26	전	354	170	국(기획재정부)						변경
26	울산	북	어물	510	2	전	1,353	255	박원수	경주시 동천동 937 동천연선 나동 806호					
27	울산	북	어물	519	3	대	81	43	오경애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항리 산119-1 금성크리스탈아파트 105호					
28	울산	북	어물	519	2	대	330	22	이찬우 외1인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938	30/330				
									오경애	중구 남외동 452-9 오석빌라 비동 202호	300/330				
29	울산	북	어물	519	4	대	330	4	경주이씨익계공파 어물소문회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938					
									대표자 이종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4길20, 108동 402호					
30	울산	북	어물	519	7	도	46	34	정영빈	울산시 동구 회정동 859-4 다운빌라 비-301					
31	울산	북	어물	519		전	1,355	9	연성배씨연암파문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연암길 1-1(연암동)					
									대표자 배중위	울산광역시 북구 상연암길 1-1(연암동)					
32	울산	북	어물	1256		도	1,421	301	국(국토교통부)						
33	울산	북	어물	527	1	담	1,453	291	박래건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13길 23(전하동)					
34	울산	북	어물	527	2	담	1,679	394	박연희 외2인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668-9, 111동 806호 (서동, 우정열메이치1단지)	1/3				
									박부자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7길 54, 308호 (전하동, 대한아파트)	1/3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	구	동	산	번		부번	면적	소유자	성명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박래화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67번길 29, 502호 (신정동, 우수아파트)	1/3	근저당권	방어진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85 (일산동)(전하지점)	
35	울산	북	어룡		931		1,329	349	원숙자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450, 109동 2104호 (서부동, 성원상파빌아파트)		근저당권	농소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4 (호계동)(신천지점)	
36	울산	북	어룡		930		1,696	270	김원수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8길 13 (연양동)		근저당권	농소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4 (호계동)(신천지점)	
37	울산	북	어룡		929		1,719	207	임정자	울산 동구 동부동 150 현대패밀리동부아파트 111동 1003호					
38	울산	북	어룡		928		1,702	411	박후원	울산 남구 신정동 902-7					
39	울산	북	어룡		927		2,050	311	김견만	울산 북구 어룡동 26					
40	울산	북	어룡		924		1,944	337	박규자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61-1 대승현대아파트 202동 910호	926/1944				
									김영오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301-28 대경익스빌 105동 1404호	1018/1944				
41	울산	북	어룡		923	2	632	111	김성철	울산광역시 북구 아룡1길 54-7(어룡동)	1/2				
									신환자	울산광역시 북구 아룡1길 54-7(어룡동)	1/2				
42	울산	북	어룡		923	1	1,205	263	문경진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산로8번길 7 (북산동)					
43	울산	북	어룡		923		851	329	김성철	울산광역시 북구 아룡1길 54-7(어룡동)	1/2				
									신환자	울산광역시 북구 아룡1길 54-7(어룡동)	1/2				
44	울산	북	어룡		921	3	710	334	이천우	울산광역시 북구 어룡동 519-1					
45	울산	북	어룡		921	1	1,227	261	이영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무수산길 514		근저당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신정지점)	
46	울산	북	어룡		921	2	1,203	346	이규철	강동면 어룡리 423					
47	울산	북	어룡		920		1,613	452	박래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남면 향교로 164, 108동 302호 (울산교동리슈빌아파트)		근저당권	강동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448-2 (장지동)	
48	울산	북	어룡		918		1,540	618	박래창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서읍 대리2길 48, 101동 306호 (구명지구푸르지오1단지)		근저당권	명서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서읍 정촌6길 34 (구명지점)	
49	울산	북	어룡		974	1	555	360	박승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밭3길 19-10, 105동 1003호 (여울목아파트)	1/2				
									한은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밭3길 19-10, 105동 1003호 (여울목아파트)	1/2				
50	울산	북	어룡		974		80	27	박승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밭3길 19-10, 105동 1003호 (여울목아파트)	1/2				
									한은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밭3길 19-10, 105동 1003호 (여울목아파트)	1/2				
51	울산	북	어룡		1276	2	65	39	국(국토교통부)						당초
51	울산	북	어룡		1276	2	65	41	국(국토교통부)						변경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	구	동 산	본번	부번		공부	권 입		성명	지분	권리구분	
52	울산	북	어물	965	3	도	159	158	울산광역시				당초
52	울산	북	어물	965	3	도	159	157	울산광역시				변경
53	울산	북	어물	965	6	도	56	36	울산광역시				
54	울산	북	어물	1360		천	88.7	26	국(국토교통부)				당초
54	울산	북	어물	1360		천	88.7	22.7	국(국토교통부)				변경
55	울산	북	어물	1358	8	도	12.1	12.1	울산광역시				
56	울산	북	어물	1358	1	도	3,974.9	84.9	울산광역시				
57	울산	북	어물	1358		도	11,262.3	139	울산광역시				당초
57	울산	북	어물	1358		도	11,262.3	135.6	울산광역시				변경
58	울산	북	어물	1359		천	1,127.6	325.0	국(국토교통부)				당초
58	울산	북	어물	1359		천	1,127.6	335.6	국(국토교통부)				변경
59	울산	북	어물	1240	146	천	5,130.0	316.0	국(국토교통부)				당초
59	울산	북	어물	1240	146	천	5,130.0	296.0	국(국토교통부)				변경
60	울산	북	어물	962	9	묘	759	55	김원태	울산광역시 중구 석남2길 4-1 (남외동)			
61	울산	북	어물	961		담	321	63	박문도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957			
계(당초)							193,524.6	18,471					61필지
계(변경)							193,240.6	18,480.9					61필지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949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송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소하천명		차일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885-4번지, 1274-1번지
	면적	일시 : 18.0㎡, 계속 : 3.1㎡
	기간	일시 : 2023. 7. 5. ~ 2023. 8. 4. 계속 : 2023. 8. 5. ~ 2027. 12. 31.
	목적 및 사유	도시가스관 매설

열람서류

1. 설계도서
2. 위치도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950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송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소하천명		남골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25-22번지, 1254번지
	면적	일시 : 41.4㎡, 계속 : 9.1㎡
	기간	일시 : 2023. 7. 5. ~ 2023. 8. 4. 계속 : 2023. 8. 5. ~ 2027. 12. 31.
	목적 및 사유	도시가스관 매설

열람서류

1. 설계도서
2. 위치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956호

울산 복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7. 5.(수) ~ 2023. 7. 14.(금)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p>가. 사업명 : 울산 복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신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주)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대표자 박만석</p> <p>다. 시 공 자 : (주)태웅건설</p> <p>라. 설 계 자 : 청운건축사사무소</p> <p>마. 감 리 자 : 청운건축사사무소</p> <p>바.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104-7번지 외 8필지 ○ 대지면적 : 59,365㎡ ○ 연 면 적 : 2,037.47㎡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5개동 ○ 세 대 수 : 해당없음 ○ 공사기간 : 2023. 3.30. ~ 2023. 09. 30(6개월) ○ 허 가 일 : 2014. 8. 13. ○ 착공신고수리일 : 2015. 6. 30. ○ 공 사 비 : 2,358,000,000 원 (V.A.T 제외) <p>사. 안전점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비용 : 3,500,000원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금액 : 3,850,000원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 금액

3. 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외	2	1,750,000	3,5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계	2		3,5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3. 7. 5.(수)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3. 7. 14.(금) 17: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3. 7. 17.(월) 13: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3. 7. 17.(월) 13:00까지

※ 적격심사대상이므로 확인서류 필히 제출(미제출 시 자격 미달로 선정제외)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3. 7. 18.(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48호(2023. 3. 3.)**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지정 및 단독입찰일 경우 단독입찰 한 자 선정. 단,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있는

자료 한정

-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중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2)로 문의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1. 총괄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점수</p> <p>○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p> <p>*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p>○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p> <p>*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p> <p>* 는 절대값 표시임.</p> <p>*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p> <p>*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p> <p>*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p>
합계	10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0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준용

[별표 2-1]

■ 5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50																					
자격점수	25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 특급기술인 : 25점 - 고급 기술인 이하 : 실격																				
교육훈련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 교육이수 : 25점 - 교육 미이수 : 실격																				
2. 신용도	50																					
부실벌점	20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등	20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10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회 사 채</th> <th>BBB- 이상</th> <th>BBB- 이상 B- 이상</th> <th>CCC+ 이하</th> <th>미제출</th> </tr> </thead> <tbody> <tr> <td>기업어음</td> <td>A3- 이상</td> <td>A3- 미만 B- 이상</td> <td>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9</td> <td>8</td> <td>0</td> </tr> </tbody> </table>	회 사 채	BBB-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	9	8	0
회 사 채	BBB-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	9	8	0																		
총 계	100																					

[별표 2-2]

■ 5천만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5											
책임기술인			25											
사업책임 (30점)	자 격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경 력	년수	13	<table border="1"> <tr>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9년 이상</td> <td>9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7년 이상</td> <td>7년 미만</td> </tr> <tr> <td>13</td> <td>11.7</td> <td>10.4</td> <td>9.1</td> <td>7.8</td> </tr> </table>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9건 이상</td> <td>9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분야별 책임기술인			30											
분야별 책임 (25점)	등 급	해당분야	6	<table border="1"> <tr> <td>특급기술인</td> <td>고급기술인</td> <td>중급기술인</td> <td>초급기술인</td> </tr> <tr> <td>6</td> <td>6</td> <td>5.5</td> <td>5</td> </tr> </table>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경 력	년수	12	<table border="1"> <tr> <td>7년 이상</td> <td>7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 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5건 이상</td> <td>5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최근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건수	25	<table border="1"> <tr> <td>5건 이상</td> <td>5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 3건 이상</td> <td>3건 미만 2건 이상</td> <td>2건 미만</td> </tr> <tr> <td>25</td> <td>22.5</td> <td>20</td> <td>17.5</td> <td>15</td> </tr> </table>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다. 신용도			10											
	부실벌점	절대평가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정지 등		절대평가	3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회 사 채</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 이상</td> <td>A2- 미만 A3- 이상</td> <td>A3- 미만 B- 이상</td> <td>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라.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6월 미만</td> <td>6월 이상 9월 미만</td> <td>9월 이상 12월 미만</td> <td>12월 이상 15월 미만</td> <td>15월 이상</td> </tr> <tr>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6.0	5.4	4.8	4.2	3.6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6월 미만</td> <td>6월 이상 9월 미만</td> <td>9월 이상 12월 미만</td> <td>12월 이상 15월 미만</td> <td>15월 이상</td> </tr> <tr>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able>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4.0	3.6	3.2	2.8	2.4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4.0	3.6	3.2	2.8	2.4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

접수번호	
------	--

원본, 부분 구분 표기

사업명 : 000 ~ 000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3.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수행기관명

[서식 2]

수행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건축주택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분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3부. 끝.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인		000000-***** (만00세)				특급자격취 득일: '00.00 .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000000-***** (만00세)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의 자격을 갖춘 자 이
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4]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명		근무부서		직위	
연령	만세	전공 (학위)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해당분야 전체 경력		년월	비고		
기간	년월	업체명	근무부서	직위	비고
“※이력사항기재란”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참여기간	참여일수	용역명	발주자	공사종류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중치	환산일수

3. 해당분야 실적

하천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월)	담당업무	소속회사	직위	발주청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 ~ ...	비고 (주)
점수				

-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한다.
- ※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같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 한 것으로 처리한다.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1부만 첨부한다.
-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한다.
-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 교육기간에서의 1주란 5일 이상이고 교육시간이 35시간 이상을 말함
-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1·2종 시설물 여부	과업 개요	과업기간 (년 월)	준공금액 (천원)	지분율 (%)	적용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 . ** . ** ~ ** . ** . ** (년 월)					
2				** . ** . ** ~ ** . ** . ** (년 월)					
	계	건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준공실적에 한하며, 연도란에 “○년 ○월○일~○년○월○일”로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과업 개요란 에는 용역 수문 규격(H*B*련)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자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6]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역명	발주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건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련규정	처분청	비고
수 행 기 관			. . ~ . . (월)				
			. . ~ . . (월)				
	계						
참 여 기술인			. . ~ . . (월)				
			.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8]

벌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벌점점수 (점)	누계평균 벌점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수 행 기 관							
		소계					
참 여 기 술 인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10]

참여기술인 업무 증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계	건							
	합계								

※ 용역업무 참여현황에는 타 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중인 용역만 작성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해당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

[서식 11-1]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미만)

□ 회사명 : ○○○○○○○(100%)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50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5	
2. 신용도	계	50	
	부실벌점	20	
	업무정지 등	20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계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 신용도	계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설도(신용평가등급)		

[서식 11-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이상)

□ 회사명 : ○○○○○○○(100%)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책임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 건 수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건 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건 수			
3. 신용도	계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건수)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건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실 적(건수)			
3. 신용도	계		
	점점·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인정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체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가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공 사 명	울산 북구 천곡동 00빌딩 신축공사		
2. 시 공 사	삼대종합건설(주)		
3. 발 주 자	배진근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행복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5. 공사개요			
현장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 175	공사기간	2023.07.15~2023.12.30
공사내용	규모: 지상5층 용도: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0]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7. 안전점검 내용	거푸집동바리5M 이상공사(2회)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삼대종합건설(주)	대 표 자 (생년월일)	김 형 우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6길 29 1001호		법인등록번호 181211-0037892
직무분야	건축분야 [0] 토목분야 [0] 종합분야 []		전화번호 052-243-6642 등록번호 울산07-0076 자격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3 년 06 월 28 일

입찰자(대표자) 삼대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형우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각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34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에서 발주(인·허가 사항 포함)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3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건축4, 종합2

연번	수행기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분야	비고
1	산업안전관리(주)	윤영만	제174호	종합	
2	오름구조안전기술원(주)	박대준외1	울산 제14호	토목(항만), 건축	
3	(주)하이콘엔지니어링	신상훈	울산 제10호	건축	
4	(주)세명구조엔지니어링	강경원외1	울산 제5호	건축	
5	(주)오에스엔지니어링	한진원	제274호	건축	
6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태석	울산 제24호	종합	

CUSTOMER		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신축공사																	결 재					SIGN																																						
PREPARED BY	(주)태웅건설	공 사 기 간 2023.03.30 ~ 2023.09.30																	DRAWN BY	조원규																																										
공종별	MONTHLY DATE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02	105	108	111	114	117	120	123	126	129	132	135	138	141	144	147	150	153	156	159	162	165	168	171	174	177	180	REMARKS
1	가 설 공 사	→																																																												
2	기초 및 토공사	→																																																												
3	철근 콘크리트공사	→																																																												
4	조 적 공 사	→																																																												
5	대 리 석 공 사	→																																																												
6	타 일 공 사	→																																																												
7	목 공 사	→																																																												
8	수 장 공 사	→																																																												
9	방 수 공 사	→																																																												
10	금 속 공 사	→																																																												
11	미 장 공 사	→																																																												
12	창 호 공 사	→																																																												
13	칠 공 사	→																																																												
14	부 대 공 사	→																																																												
A	공정율	계획 공정율 실적 공정율																																																												
B	작업인원 투입계획																		DATE	REVNO.	FILE NO.																																									
C	장비계획	100TON 크레인 45M 스카이 32M 스카이																																																												
*. NOTE																																																														